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40 발의연월일: 2025. 3. 14.

발 의 자:이정헌・박홍배・박민규

박지원 • 박해철 • 김승원

정동영 • 이훈기 • 김영환

박용갑 • 황정아 • 조인철

강준현 · 김우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의 이동 시 방해 금지 등 우선 통행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소방자동차 이동상의 불법 장애물, 협소한 도로폭 등 도로 상황으로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,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, 도로 상황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4(소방자동차 이동환경 조사)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장애물, 협소한 도로의 폭 및 급경사 등으로 인하여 소방자동차의 이동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할 수 있다.
 -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, 도로 상황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범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1조의4(소방자동차 이동환경
	조사)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
	방서장은 장애물, 협소한 도로
	의 폭 및 급경사 등으로 인하
	여 소방자동차의 이동이 곤란
	한 지역을 조사할 수 있다.
	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
	은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
	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
	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
	거, 도로 상황 개선 등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
	<u>수 있다.</u>
	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범위 및
	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
	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